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464,559,414	13,936,782
일반회계		425,902,952	12,777,089
특별회계		38,656,462	1,159,694
	기타특별회계	38,656,462	1,159,694
	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	824,000	24,72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37,040	16,111
	농 어 촌 소 득 금 고 사 업 특 별 회 계	2,424,541	72,736
	기반시설특별회계	81,415	2,442
	섬진강댐특별회계	8,216,378	246,491
	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5,315,973	159,479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20,329,056	609,872
	하수도사업특별회계	928,059	27,842

- 제 2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-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- 제 4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10,700,000천원」으로 한다
- 제 5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6,619,374천원」과 같다
- 제 6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「명시이월 사업조서」와 같다.
- 제 7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「계속비 사업조서」와 같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
-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.